

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0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노동관계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조사관의 조사수행에 관한 사항 및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·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노동조사관의 조사수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

- (1) 현장조사, 자료제출 및 출석·진술 요구(안 제23조제1항)
- (2) 외부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(안 제23조제2항)

나.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

- (1) 시정권고 사항의 통지 및 공표(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)
- (2) 시정권고 조치결과에 대한 시장 보고(안 제24조제3항)
- (3) 시정권고의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·점검(안 제26조)

다. 시정권고 사항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

- (1) 이의신청 및 그 처리 절차(안 제25조)
- (2)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노동조사소위원회 신설(안 제20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
(2) 입법예고(2019. 5. 9. ~ 5. 29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첨부

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심의

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는 제13조제2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노동조사소위원회를 두며, 이 경우 노동조사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.
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노동조사소위원회 이외에도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

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.

제22조 앞에 “제4장 노동조사관”을 삽입한다.

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2조(설치 및 조사범위) ① 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조사관(이하 “조사관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.

1.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2.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연구소, 민간기업의 노무부서,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

③ 조사관은 신고인의 신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(이하 “조사대상기관”이라 한다)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. 다만,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.

1. 시의 본청(과·담당관)·소속기관·합의제행정기관

2. 시 소재 자치구(시의 위임사무와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)

3. 시 산하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

4.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(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)

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(조사수행) ① 조사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2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·문서열람·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·자료제출 및 출석·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조사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24조(시정권고 및 후속조치) ① 시장은 조사관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결과 및 그에 따른 시정권고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,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(조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 한다)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5조(이의신청) ① 조사대상기관의 장이 시정권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

이의신청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사소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6조(시정권고 이행실태의 확인·점검) 조사관은 제24조에 따른 시정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
제27조(시행세칙)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설치 및 기능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제20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제22조(노동조사관) ① (생략)</p>	<p>제13조(설치 및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제2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심의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제20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제13조제2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노동조사소위원회를 두며, 이 경우 노동조사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.</p> <p>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노동조사소위원회 이외에도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4장 노동조사관</u></p> <p>제22조(설치 및 조사범위) ① (현행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</u></p> <p>2. <u>자치구(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.)</u></p> <p>3. <u>시 산하 투자·출자·출연기관</u></p> <p>4. <u>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</u></p> <p>④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조사관은 신고인의 신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(이하 “조사대상기관”이라 한다)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. 다만,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시의 본청(과·담당관)·소속기관·합의제행정기관</u></p> <p>2. <u>시 소재 자치구(시의 위임사무와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)</u></p> <p>3. <u>시 산하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</u></p> <p>4. <u>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(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)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23조(조사수행) ① 조사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2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·문서열람·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·자료제출 및 출석·진술을 요구할 수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있다.</p> <p><u>② 조사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24조(시정권고 및 후속조치) ①</u> <u>시장은 조사관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결과 및 그에 따른 시정권고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<u>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,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(조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 한다)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5조(이의신청) ① 조사대상기관</u></p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220 1010 384 1055"><신설></p> <p data-bbox="220 1267 384 1312"><신설></p>	<p data-bbox="850 309 1414 544"><u>의장이 시정권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.</u></p> <p data-bbox="850 562 1414 981"><u>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15 1010 1414 1245"><u>제26조(시정권고 이행실태의 확인·점검) 조사관은 제24조에 따른 시정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</u></p> <p data-bbox="815 1267 1414 1503"><u>제27조(시행세칙)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 (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노동조사 시정권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어 시정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고, 노동조사 수행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며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권고의 이행 및 후속조치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

4. 작성자 : 노동조사관 이수원(2133-5525)